

지방의회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 기준 폐지 등 자율성 보장 건의안

(김호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2
----------	-----

발의년월일 : 2018년 12월 28일

발 의 자 : 김호진, 노식래, 서윤기, 강동길,
이광호, 이태성, 이성배, 양민규,
고병국, 김호평, 권순선, 봉양순
의원(12명)

1. 주 문

- 서울특별시의회는 위원회 구성·운영의 실질적인 자율성 보장과 각종 의안 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대통령령을 폐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 건의함.

2. 제안 이유

-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도 둘 수 없는 지방의원은 의회사무기구를 통해 의정 활동 지원을 받고 있으며,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 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두는 위원회는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를 대통령령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실질적인 자율성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등 같은 법체계 안에서조차 상호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는 ‘의원정수 110명 이하’ 로 4·5급 각 10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밖에 없어 최대 10개의 위원회만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등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다양한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운영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 받고 있음.
- 특히 서울시의회는 매년 40조가 넘는 방대한 예·결산 심의의 중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상설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명 이외 추가적으로 전문위원을 배치할 수 없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처럼 지방자치법령의 불합리한 구조로 인해 지방의회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며, 의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위원회 구성과 전문위원의 인력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해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대통령령을 폐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강력히 촉구 건의하려는 것임.

3. 이 송 처

-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 기준 폐지 등 자율성 보장 건의안

지방의회는 헌법상 제도적 보장을 받는 필수기관으로 1991년 지방자치 부활이후 지방화·분권화 시대에 발맞춰 단체장의 전횡과 독주를 견제·감시하고, 주민들의 복잡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지방행정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 해오고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도 둘 수 없는 지방의원은 의회사무기구를 통해 의정활동 지원을 받고 있으며,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 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위원회에는 소속 위원의 자치입법활동 등 각종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두도록 「지방자치법」 제59조에 규정하고 있다.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 직급과 정수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두는 위원회는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를 대통령령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실질적인 자율성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등 같은 법체계 안에서 조차 상호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는 ‘의원정수 110명 이하’로 4·5급 각 10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밖에 없어 최대 10개의 위원회만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등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다양한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운영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 받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매년 40조가 넘는 방대한 예·결산 심의의 중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명 이외 추가적으로 전문위원을 배치할 수 없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법령의 불합리한 구조로 인해 지방의회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며, 의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위원회 구성과 전문위원의 인력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위원회 구성·운영의 실질적인 자율성 보장과 각종 의안 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대통령령을 폐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2018. 1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